
문서번호 : 총무-22-04-05-1
수 신 : 통일부장관
참 조 :
발 신 : (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외 4
제 목 : 중국 및 러시아 억류 탈북민 대책 마련 촉구 청원
일 자 : 2022. 4. 5(화)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청원인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기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 2. 17.자 보고서에서,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난민 또는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국제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중국은 1988. 10. 4. 비준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거하여 그 탈북민들을 고문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인도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북한으로의 송환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에 따라 국제인권 감시기구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확인할 때까지 강제로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권고한 바 있고(유엔 COI 보고서 443, 447, 451, 1221항 참조), COI의 이 권고 이후 2021. 12. 16. 제76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르기까지 매년 유엔은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중국과 주변국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반복하여 권고해 왔습니다(제76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2. (a) (v)항 참조).
4. 그런데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22. 3. 21.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명시하여 탈북민들에 대해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피난처(asylum)를 찾던 북한 주민 3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북한 영사관에 감금되어 있고, 약 1,500명의 북한주민들이 불법이주자로 몰려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구

금되어 있으며,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해제되는 즉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11, 50항 참조). 중국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위 1,500명 중에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MBN 기사 참조), 또한 한 달 전, 중국 상하이에서 약 20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 탈북하여 북한 정권과 중국 당국이 이들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 참조).

5.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보편적·강행적 국제인권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는 고문의 위험이 있는 다른나라(북한)으로 이들 탈북민들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가집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정부기관과 공무원, 특히 통일부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보호의 원칙은 물론 재외국민 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북한이 코로나19로 봉쇄한 국경을 언제 해제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이를 방지할 경우 전격적인 강제북송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귀하에게 중국과 러시아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실태와 강제북송 방지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실 것과 그 조치결과를 적어도 2주일 내인 오는 4월 18일까지 회신(이메일 : thkim8279@gmail.com, 팩스 : 02-333-1834)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2. 4. 5.

위 청원인

1.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이재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2.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 김태훈)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양천로 452
3.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 김석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1, 10층(공화빌딩, 10층)
4.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표 민계식)
서울 중구 을지로 157
5.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대표 김태훈)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양천로 452

<첨부서류>

- | | |
|--------------------------|----|
|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발췌) | 1부 |
| 1. 유엔총회(76차) 북한인권결의안(발췌) | 1부 |
| 1.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발췌본) | 1부 |
| 1. MBN 기사 | 1부 |
| 1. 중앙일보 기사 | 1부 |
| 1. 이투데이 기사 | 1부 |